

의안
번호

243

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2. 20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243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02. 05.

라. 회부일자 : 2024. 02. 14.

2. 제안이유

- 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(2024.6.30.) 및 수탁 반납의사 표명에 따라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(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)을 추진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(재위탁)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- 시설명 : 월곡종합사회복지관
- 위 치 : 오패산로16길 23(하월곡동)
- 규 모 : 대지 1,274㎡/ 연면적 2,015㎡(지하1층, 지상4층)
- 개관일 : 2005.3.2.

나. 위탁기간 : 2024.7.1. ~ 2029.6.30.(5년)

다. 위탁방법 :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·선정

라. 위탁사무의 범위 :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

-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마. 신청자격

-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(사회적협동조합 포함)이 원칙
※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
5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성북구 민간위탁 조례’)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3월 2일 개소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복지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’) 제5조1)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재단에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.

〈월곡종합사회복지관 현황〉

소재지	시설현황(m ²)	연간사업비 (2024년 기준)	위탁기간	운영주체	운영 조직
성북구 오패산로16길 23(하월곡동)	전용공간 2015.4m ² (지하1층/지상4층)	총 1,126,749천원 - 인건비 : 974,730천원 - 운영비 : 135,039천원 (사: 70%, 구: 30%) - 기 타 : 16,980천원 (사: 100%)	2019.07.01. ~ 2024.06.30.	사회복지법인 해명	관장 포함 22명

- 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(개정 2021.5.6.)
-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,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 (개정 2021.5.6.)

□ 주요내용

-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,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」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 추진이 가능하나, 이번 위탁은 2024년 1월 25일 수탁체에서 수탁운영 반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²⁾을 추진하려는 사항임.

□ 민간위탁의 적정성

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³⁾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²⁴⁾ 및 「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, 5년간 위탁할 수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4. “재위탁”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4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~7.(생략)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있음.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운영은 적정해 보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- 다만, 이번 재위탁은 수탁자가 변경되는 만큼 수탁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